용인특례시 함께 만드는 미래

법률동향

2026. 9. 30.(수)

법 무 과 장 이명희(☎32030)
법무행정팀장 최윤미(☎33724)
주 무 관 김덕영(☎33235)

10월 주요 시행 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

[시행 2026. 10. 1.] [법률 제21504호, 2026. 3. 31.,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럼피스킨병을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조정하고,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정의를 신설하며, 가축폐기물처리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가 수행 중인 전화 예찰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사육제한 명령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역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행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된 ‘럼피스킨병’을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조정하여 방역관리 기준을 합리화함(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

나.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정의를 신설하고, 해당 병원체의 분리·분양·이동 신고 및 안전관리 기준·점검 근거를 마련하며, 위반 시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관리체계를 구축함(제2조제9호 신설, 제14조, 제14조의2 신설 등).

다. 살처분 및 사체 등을 처리하는 가축폐기물처리업의 정의를 신설하고, 해당 영업의 등록제도와 영업자에 대한 정기점검 등 가축폐기물처리업의 관리체계를 신설함(제2조제10호 및 제5조의5부터 제5조의9까지 신설).

라.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장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가축전염병 의심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5조제9항 및 제10항 신설).

마. 가축사육제한 명령의 이행이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의3 신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시행 2026. 10. 1.] [법률 제21506호, 2026. 3. 31.,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청장은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선정할 때 산림이 집단화된 지역, 산림 여건, 산림경영기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밀원수 확충을 위하여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육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에 기여하려는 것임.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

[시행 2026. 10. 1.] [법률 제21503호, 2026. 3. 31.,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가상자산 형태로 피해자금을 편취하거나 현금 형태의 피해자금을 도피시키는 수단으로 가상자산을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가상자산이 연루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해서는 범죄의 예방 및 피해구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인바, 이 법의 적용대상을 기존 금융회사 외에 가상자산거래소까지 확대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이용한 행위를 추가하며, 피해자산 및 피해환급자산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여 가상자산 형태의 피해자산에 대해서도 지급정지·채권소멸절차 등을 통한 피해 보전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환급되는 자산이 가상자산이고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가상자산거래소 등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해당 가상자산을 매도하여 현금화한 후 해당 매도대금을 피해자에게 환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가상자산을 이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력과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전기통신사업법 –

[시행 2026. 10. 1.] [법률 제21499호, 2026. 3. 31.,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전기통신사업자는 대리점·판매점의 관리·감독 기준 마련 및 모니터링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본인확인 의무 위반에 대한 보고·점검체계를 신설하며, 고의·중과실 위반 시 계약 해지 및 사전승낙 철회 등 제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 보호 매뉴얼 마련 및 이용자 보호 조치 명령의 근거를 마련하며,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최적요금제를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간통신사업자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에 대리점·판매점에 대한 관리·감독 또는 모니터링을 소홀히 하여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다수의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추가함(제20조제1항제4호의3 신설).

나.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와 관련하여 이용자 보호 업무평가의 주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함(제32조제2항제1호 신설).

다.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 계약 체결 시 본인 확인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타인사용 제한에 관한 내용 등을 고지하도록 함(제32조의4제4항).

라. 전기통신사업자는 대리점 · 판매점의 부정가입 방지를 위해 관리 · 감독 기준을 마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신고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함(제32조의4제5항 신설).

마.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와 체결된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이 본인 확인 의무를 준수하였는지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반 계약 발견 시 처리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제32조의4제6항 및 제7항 신설).

바. 전기통신사업자는 대리점 · 판매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본인 확인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대리점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판매점에 대하여 사전승낙을 철회하도록 함(제32조의4제9항 신설).

사.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침해사고 발생 시를 대비한 이용자 보호 매뉴얼 작성 · 운용 의무를 부과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긴급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특정 부가서비스 제공 등 이용자 보호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제32조의20 신설).

아. 일정한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요금 · 이용행태 등을 분석하여 이용자에게 최적요금제를 고지하도록 함(제32조의21 신설).

–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시행 2026. 10. 1.] [법률 제21501호, 2026. 3. 31., 일부개정]

○ 제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학원 현장에서 유아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지 아니한 모집시험이 실시되고 있어 사교육 조기 과열 등으로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는바, 학원 설립 · 운영자 등이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며, 유아가 학원 등에 등록한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관찰 · 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는 가능하도록 하되, 진단의 구체적인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경쟁을 완화하고 유아 발달 단계에 맞는 건전한 학원 운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00호, 2026. 9. 22.,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상한시간을 개선하고 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 직위에 보직된 4급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초과근무보전수당을 신설하며, 시간외근무수당의 부정 수령을 예방하기 위하여 징계의결 요구사유를 추가하는 한편, 우수인재를 조기 선발하여 전문가로 장기 육성할 수 있도록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관련 수당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간외근무수당 1일 상한시간 폐지(제15조제4항)

업무수행 중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시간외근무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위해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의 1일 4시간 상한을 폐지함.

나. 시간외근무 관련 관리 강화(제15조제7항 및 제8항)

1) 불필요한 시간외근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장관이 기관 또는 부서별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을 관리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2) 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종전에는 위반행위를 2회 이상 적발했을 때 관할 징계위원회에 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부정 수령한 시간외근무수당의 총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1회 적발 시에도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함.

다. 복수직급 공무원에 대한 초과근무보전수당 신설(제17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별표 13의2 신설)

관리업무수당 지급 대상이지만 시간외근무 명령권자가 아닌 복수직급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업무수행 중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시간외근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초과근무보전수당을 신설하고, 초과근무보전수당 지급액 산정 기준을 마련함.

라. 전문직무급 지급 제도 개선(별표 11)

실무자부터 관리자까지 장기적으로 전문가를 양성하는 체계를 위하여 신설한 부전문관에 대한 전문직무급 지급 기준을 추가하고, 전문분야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하여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전직 없이 10년 이상 근무한 전문직공무원에 대한 가산금을 신설함.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23호, 2026. 9. 29.,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밀원수 확충을 위하여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506호, 2026. 3. 31.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요건을 30헥타르 이상의 집단화된 국유림 등일 것, 밀원수 특화단지 지정대상 산림 면적의 75퍼센트 이상이 밀원수이고 60퍼센트 이상이 단일 수종의 밀원수인 산림일 것, 밀원수 특화단지 지정대상 산림의 소유자 전원이 동의할 것 등으로 정하고, 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산림소유자는 산림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정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

[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22호, 2026. 9. 29.,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산업에 필요한 생산·제조 시설 등을 자동화·기계화 및 지능화하려는 식품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산업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1508호, 2026. 3. 31.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로봇·센서 등 자동화 설비 및 선별기·포장기 등 기계화 설비 등을 도입하려는 식품사업자에 대하여 그 도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비용 지원 시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목적 달성의 적합성과 자동화 등 설비 또는 시스템 도입 계획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식품산업 관련 시설의 자동화 등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설비 또는 시스템 도입 사업의 목적·내용 및 필요성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01호, 2026. 9. 22.,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의 1일 4시간 상한을 폐지하여 지방공무원의 시간외근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불필요한 시간외근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기관 또는 부서별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간외근무수당의 부정 수령을 예방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행위를 2회 이상 적발했을 때에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부정 수령한 시간외근무수당의 총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1회 적발 시에도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03호, 2026. 9. 29.,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유아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학원 등의 유아 대상 모집 시험으로 사교육의 조기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유아를 대상으로 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금지하되, 유아가 학원 등에 등록한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는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501호, 2026. 3. 31.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학원설립·운영자 등이 진단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아의 보호자에게 해당 진단 행위의 목적, 방식, 결과에 따른 교육활동 지원내용 등을 안내하도록 하고,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습행위의 과정 중에 진단 행위를 실시하며, 그 결과는 유아 개인의 학습진행 상황 등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하되, 점수·순위 등을 표시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

[시행 2026. 10. 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93호, 2026. 9. 29.,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럼피스킨병을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법률 제21504호, 2026. 3. 31.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럼피스킨병을 살처분을 명하여야 하는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정비하는 한편, 가축방역사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보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축방역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소속기관이 실시하는 24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가축방역사로 위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

[시행 2026. 10. 1.] [국토교통부령 제1627호, 2026. 9. 15.,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장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의 소유자 정보 및 주거용 건물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6683호, 2026. 9. 15. 공포·시행)됨에 따라, 시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전입세대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혼잡통행료의 납부편의를 위하여 미납 통행료를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늘리려는 것임.

- 공소청법 -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1호, 2026. 9. 29.,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정비되었음. 이에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 공소청법 -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수사기관·공소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됨에 따라, 공소청의 조직, 검사의 직무, 인사 및 그 밖에 공소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소청 등의 조직(제2조 및 제3조)

신설되는 조직구조는 공소청, 광역공소청 및 지방공소청으로 하되, 공소청은 대법원에, 광역공소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공소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각각 설치하고, 지방법원 지원 설치지역에는 지방공소청 지청을 둘 수 있도록 하며, 각 공소청과 지청의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과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에 따르도록 함.

나. 검사의 직무(제4조)

검사의 직무와 권한을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장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 집행 지휘·감독,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등 법률에 규정된 사항 등으로 정함.

다. 검사사무에 관한 지휘·감독(제7조)

검사 직무의 독립성 제고 차원에서 검사는 검사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지휘·감독을 받도록 함.

라. 사건심의위원회의 설치(제21조)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공정성이 우려되는 사건에 관한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상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광역공소청에 사건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마. 검사 직무의 위임·승계 및 이전(제37조)

검찰총장 및 지청장을 제외한 광역공소청장 및 지방공소청장은 소속 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고, 소속 검사의 직무를 승계하여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에게 이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바. 근무성적 평정기준 마련(제43조제2항)

검사 근무성적 평정을 실질화하기 위하여 근무성적 평정기준에 항고·재항고의 인용률과 인용사유, 재정신청의 인용률과 인용사유 및 무죄판결률과 무죄사유 등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함.

사. 검사의 징계 파면 도입(제45조제1항)

검사의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하여 중대한 비위가 있는 경우 징계에 의한 파면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검사의 공적 책임성을 제고함.

아.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제47조제2항)

검사의 적격심사를 위하여 설치되는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 수를 6명으로 하고, 그 중 변호사 자격이 없는 위원이 한 명 포함되도록 함.

자. 정치운동의 금지 및 정치 관여죄 도입(제51조제1호 및 제59조)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검사는 재직 중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되는 행위 등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함.

차. 종전 수사개시사건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6조제2항·제3항)

이 법 시행 당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여 수사 중인 사건은 소관 수사기관에 이송하되,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상 불가피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청이 90일 이내에 해당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함.

카. 종전 검찰청 검사 및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7조제1항)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 검사 및 검찰청 소속 직원을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청 소속 검사·직원으로 간주하되,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직무 내용의 상당 직급으로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직개편에 따른 검찰청 공무원의 재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추가로 마련함.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21호, 2026. 9. 29.,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긴급돌봄센터의 설치·운영 및 운영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등 안정적인 긴급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정비됨에 따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 정부조직법 -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 · 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 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 · 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 제1항).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16호, 2026. 9. 29., 일부개정]

○ 제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정비되었음.

이에 수사 · 기소 분리 원칙을 확립하면서도 성폭력범죄,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범죄, 아동학대범죄,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노인학대관련범죄 및 가정폭력범죄 등 7대 범죄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따라 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형사소송법 –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일부개정]

○ 제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었음. 이에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이 법을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처 및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 사이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할 것이 요구됨.

이에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며,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시정조치요구권, 재수사요구권을 보완하고, 강제수사 과정의 영상녹화 등 절차적 통제장치와 고소인 등의 이의제기 신청 등 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장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건인지 등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송치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삭제하고, 체포 · 구속 · 압수 · 수색 등 개별 수사권 관련 조문에서 검사 부분을 삭제하며, 영장청구권, 영장집행 지휘권 및 긴급체포 승인권 등은 현행을 유지함(제196조 삭제, 제200조의2제1항 및 제200조의3제2항 등).

나.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사유를 구체화하고, 보완수사의 이행, 결과 통보 및 기간 연장 등 관련 절차를 정함(제197조의2).

다. 사법경찰관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등에 대한 검사의 시정조치요구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 송치 외에 다른 수사기관에의 이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197조의3제5항).

라. 사법경찰관이 압수 · 수색 · 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강제수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영상녹화 하도록 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의자의 진술 과정을 녹음하도록 함(제220조의2 및 제244조의6 신설).

마.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고소인 등에게 그 결정서와 함께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 및 서식을 함께 보내도록 하고, 위법 · 부당한 수사행위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고소인 등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사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고소인 등은 수사 관계 기록에 대한 열람 · 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245조의6, 제245조의11 및 제245조의12 신설).

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수사요구 및 그 이행의 기한 등 관련 절차를 정함(제245조의8).

사. 검사가 송치 또는 송부된 사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른 범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 등에게 수사를 요청하고, 해당 사법경찰관 등은 수사요청에 대한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제245조의9).

아.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공소제기 및 재수사요구 여부의 결정 또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함(제245조의13 신설).

자. 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대상에 가정폭력범죄, 노인 · 아동 · 장애인 학대범죄 및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가 있고 해당 범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자를 추가함(제260조제1항).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

[시행 2026. 10. 2.] [대통령령 제36704호, 2026. 9. 29.,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며,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시정조치요구권·재수사요구권을 보완하고, 고소인 등의 이의제기 신청 등 범죄 피해자의 권리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2009호, 2026. 9. 29.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사건처리, 공소유지 등의 과정에서 서로 협력하도록 하고, 보완수사요구·시정조치요구·재수사요구 절차를 정비하며,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불송치한 경우 고발인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정하고, 검사의 수사요청 및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력 강화(안 제7조, 안 제7조의2·제8조의2 및 제8조의3 신설)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송치 전에 상호 의견을 제시·교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를 금융·증권 등 전문적인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사건,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 관련 사건, 선박충돌 등 범죄가 국제항해선박과 관련된 사건 및 성폭력범죄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관련 사건까지 확대함.

2) 관계 수사기관은 국가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에 대하여 공소청과 상호 협의하여 합동대응할 사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긴밀히 협력하도록 함.

3) 검사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공판기일에 재정(在廷)하여 지원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은 이에 협력하도록 함.

4) 사법경찰관은 수사와 관련하여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할 때에는 서면 및 필요한 관계 서류 등을 함께 송부하도록 하고,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의견 요청에 대하여 신속하게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며,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의견을 존중하여 수사하도록 함.

나. 피의자진술 등의 영상녹화·녹음 및 압수·수색·검증의 영상녹화 절차(안 제26조의2 및 제38조의2 신설)

1)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진술을 영상녹화하거나 피의자신문 등을 녹음하는 경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영상녹화 또는 녹음 사실을 고지한 시각과 방법 등을 조서 또는 별도의 서면에 적도록 함.

2) 사법경찰관은 압수·수색·검증 과정을 촬영·녹화하는 경우 영장 제시 및 촬영·녹화 고지, 영장 사본 교부 등이 확인될 수 있게 하도록 하고, 영상녹화장치로 촬영·녹화하지 않을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전자문서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현장의 급박한 상황으로 즉시 집행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정함.

다.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방법 등(안 제29조의2 신설)

1)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영장신청에 대하여 그 필요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면담하려는 경우에는 출석, 화상, 전화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2)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피의자 면담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은 이에 협조하도록 함.

3) 검사는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 피의자 면담에 필요한 조치로써 체포된 피의자의 호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은 체포된 피의자의 호송이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면담 방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4) 검사는 구속 사유 등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법경찰관에게 출석, 화상, 전화, 서면 등으로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사건관계인의 권리보호 강화(안 제47조, 안 제53조의2 신설)

1)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 고소인 등에게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도록 함.

2)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발인이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범죄를 직무유기죄, 공무집행방해죄, 무고죄, 위증죄, 문서에 관한 죄 등으로 정함.

마. 보완수사요구 절차 정비(안 제60조, 안 제60조의2 · 제60조의3 및 제61조의2 신설)

1)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검사에게 보완수사 이행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보완수사 결과 통보서에 종합수사 결과를 포함하여 작성한 다음 사건기록과 함께 송부하도록 함.

2)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보완수사 기간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사법경찰관에게 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완수사요구 이행 기간을 관리하도록 함.

3) 사법경찰관은 보완수사 이행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려는 경우 미리 종합수사 결과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보완수사 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건기록과 함께 송부하도록 하고,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완수사요구 이행 결과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보완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4)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의 장은 상급 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하여 보완수사요구를 할 때에는 그 이유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과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해당 수사관서 또는 수사기관에 송부하도록 함.

바. 재수사요구 절차 정비(안 제63조 및 제64조, 안 제64조의2 및 제64조의3 신설)

1)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되, 해당 사건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2) 검사는 필요한 경우 재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시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3)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의 장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재수사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에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수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4)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의 장은 상급 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하여 재수사요구를 할 때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부받은 관계 서류 및 증거물 등을 해당 수사관서 또는 수사기관에 송부하도록 함.

사. 검사의 수사요청 절차(안 제65조의2 신설)

1)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송치 또는 송부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건과 다른 범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사를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수리하고 입건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며, 검사의 수사요청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송치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검사에게 통지하도록 함.

2) 관할 수사기관의 장은 검사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 혐의를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수리하고,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범죄의 혐의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아.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절차(안 제65조의3 신설)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재수사요구의 결정 및 공소유지에 필요한 때에는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 사법경찰관에게 출석, 화상, 전화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함.

- 근로기준법 -

[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33호, 2026. 4. 7.,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감독관의 직무·권한, 업무 절차를 규정하는 등 노동 감독 행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제정됨에 따라, 근로감독관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임금체불 관련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 해당하는 도급인이 일정한 업종, 금액 규모 및 기간의 사업을 도급하는 경우 그 도급금액 중 수급인이 자신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 청소년 보호법 –

[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37호, 2026. 4. 7.,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청소년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래연습장업을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변경하고, 청소년의 근로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하며, 영업장 종사자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 의무 대상에서 해당 업소의 종사자를 제외하고,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판매·대여·배포 시 나이 및 본인 확인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법 –

[시행 2026. 10. 15.] [법률 제21544호, 2026. 4. 14.,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주민자치회의 근거를 이 법으로 이관하고,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회 위원의 정치적 중립 규정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방송법 시행령 –

[시행 2026. 10. 16.] [대통령령 제36687호, 2026. 9. 15.,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광고 시장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한 양질의 콘텐츠 제작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채널의 방송광고 시간을 매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해당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의 100분의 20 이하로 규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채널별로 1일 동안 방송되는 총 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하로 완화하고, 종전에는 방송프로그램의 시간이 45분 이상인 경우에만 중간광고가 가능하도록 하던 것을 방송프로그램의 시간이 30분 이상인 경우에도 중간광고가 가능하도록 하며, 자막광고, 가상광고 및 간접광고의 크기를 화면의 ‘4분의 1 이하’에서 ‘3분의 1 이하’로 완화하는 한편, 가상광고 및 간접광고가 허용되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를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과 보도·시사·논평·토론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 모든 방송프로그램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시행 2026. 10. 25.] [행정안전부령 제620호, 2026. 4. 24.,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사업에 대해 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업체의 참가를 확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제한입찰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종합공사 금액을 100억원 미만에서 150억원 미만으로 상향하는 한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업체가 입찰공고 직전 본점 소재지를 이전함으로써 지역제한입찰 사업에 참가하고 그로 인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뿌리내린 업체가 참가하지 못하게 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종전에는 입찰자의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있도록 참가요건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 2026. 10. 29.] [법률 제21587호, 2026. 4. 28., 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현재 체육 분야에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국제스포츠대회의 유치와 개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국제적 문화행사에 특화된 법률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관련 정책 추진이 개별 부처 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존하는 한계가 있는바, 국제적 문화행사 및 문화교류 행사의 원활한 유치·개최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제문화행사“를 국가 간 문화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외국의 정부·기관·단체 또는 외국인이 참여하는 공연, 전시, 축제, 박람회 등 문화행사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또는 일정한 기관·단체 등이 주관·후원하는 행사 등으로 정의함(제2조제1호).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행사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공연장, 전시장 등 행사장 시설 또는 공간 제공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6조제1항).

다. 국제문화행사의 준비 및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국제문화행사 종합계획의 수립 및 세부운영계획의 수립·시행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제문화행사별 조직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라. 조직위원회는 국제문화행사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념주화의 발행을 한국은행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5조).

– 도서관법 –

[시행 2026. 10. 29.] [법률 제21588호, 2026. 4. 28.,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하는 국가도서관 위원회의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도서관 위원회의 소속을 대통령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하고, 국무총리와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위원장이 되도록 하는 한편, 작은도서관을 설립·운영하려는 경우 설립·운영 주체에 관계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통일함으로써 작은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

[시행 2026. 10. 29.] [법률 제21594호, 2026. 4. 28.,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스포츠 진흥을 지원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이스포츠팀 창단 및 운영, 학교 및 청소년 대상 이스포츠 활동과 진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추가함으로써 지방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 청소년 기본법 –

[시행 2026. 10. 29.] [법률 제21601호, 2026. 4. 28.,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에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과 청소년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전국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하여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조정 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며,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가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여 유사한 위원회의 중복을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고려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위원에 청소년을 포함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 결정과정에서 청소년의 요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초·중등교육법 –

[시행 2026. 10. 29.] [법률 제21580호, 2026. 4. 28.,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을 제한하고, 장애인 학생 및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가 적시에 제작·보급될 수 있도록 하며, 학교민원대응기구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의 역량 함양, 교육정책 이해 및 소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학부모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18조의7 및 제18조의8 신설).

나. 학교생활기록을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25조의2 및 제67조제1항제1호 신설).

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장애인 학생과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가 적시에 제작·보급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부장관은 교과용 도서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교과용 도서의 디지털 파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29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라. 학교민원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학교민원을 제기하는 자에게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와 직원에 대한 업무방해행위의 금지의무를 부과하며, 학교민원대응기구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제35조 및 제37조 신설).

– 주민등록법 시행령 –

[시행 2026. 10. 29.] [대통령령 제36282호, 2026. 4. 28.,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사생활 보호를 위해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세대원 등재순위를 개선하고, 외국인의 행정편의를 높이기 위해 외국인 성명표기 방식을 개선하며, 지문을 통한 본인확인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시 원칙적으로 지문을 전자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세대원 등재순위 개선(제6조제2항)

1) 종전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등재순위를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세대주가 신고한 순서로 하여 재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경우 후순위로 등재되어 재혼가정 여부가 확인되는 문제점이 있었음.

2) 앞으로는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세대주 직계존비속과 같은 순위로 작성하도록 하여 사생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함.

나. 외국인 등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록 · 관리 개선(제6조의2제6항 및 제9조제1항)

1)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본인 외에도 외국인 등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 세대원이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록사항의 정정 또는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편의를 제고함.

2)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의 성명을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영문으로, 가족관계등록부는 한글로만 기록하여 동일인임을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로마자 성명과 한글 성명을 함께 기록하도록 함.

다.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시 지문의 전자적 등록 강화(제36조제3항)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에 지문을 찍는 경우 실제 지문과 일치율이 떨어져 본인확인에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지문을 찍어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하도록 함.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

[시행 2026. 10. 29.] [행정안전부령 제621호, 2026. 4. 28., 일부개정]

○ 제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 등의 성명표기 방식을 개선하고, 외국인 등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록사항의 정정 · 변경 신청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주민등록표 등 · 초본을 열람하거나 교부할 때 세대주와의 관계를 세대주의 배우자가 아닌 가족의 경우 세대원으로, 그 밖의 경우는 동거인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 국회 접수 의안 확인(국회)
http://likms.assembly.go.kr/bill
○ 중앙부처 입법예고 내용 확인(법제처)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List.mo?mid=a10104010000